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24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김정재 · 박충권 · 박성훈
김장겸 · 임태영 · 서명옥
김미애 · 최수진 · 추경호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제도는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대기업등과의 과도한 경쟁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지역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은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등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기업등이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시정명령)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는 대기업등이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도지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이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의 사업을 인수
· 개시 또는 확장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u> <u>②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지역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신 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은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등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기업등이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신 설>

<신 설>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시정명령)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는 대기업등이 제13조의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도지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이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제29조(벌칙) <신 설>

① · ② (생략)

<신 설>

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29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u>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